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3일

발 의 자 : 김태수·송정빈·김제리·김광수·
김정환·김기덕·송명화·유정화·
김경영·김생환·이광성·최정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 수도사업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14조제1항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요금(10m³/월), 소방용수 구경별기본요금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보존 받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 세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 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